

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4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내용	근거 법령	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27조 제2항제1호	등록취소		
나. 법 제22조제2항,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 제11조제1항,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	법 제27조 제2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다.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	법 제27조 제2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
라.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	법 제27조 제2항제4호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	

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				
마.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(같은 항 제6 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)	법 제27조 제2항제5호	등록취소		